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전문벤처기업지원센터 지정 근거 신설〉
■ 김소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160호)

2025. 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유 인 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전문벤처기업지원센터 지정 근거 신설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소회의원 등 19인
2. 발의연월일 : 2024. 11. 01.
3. 회부연월일 : 2024. 11. 0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취업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첨단 전문 분야의 기술력을 갖춘 벤처기업 창업 및 성장이 지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AI, 기후테크 등 지역에 특화된 첨단기술 분야의 벤처기업 창업을 성공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 특화 전문 분야별 벤처기업 창업 및 육성 지원 인프라가 필요함.

특히, 딥테크 기반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력을 가진 창업 준비 기업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가진 전담인력을 갖춘 전문 분야별 창업 지원 기관이 반드시 필요함.

하지만, 현행법은 전문 분야별 벤처기업 창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함. 분야별 전문성이 결여된 창업지원 기관으로는 첨단 전문 분야별 특성에 맞는 실질적 지원과 경쟁력 있는 스타트업 발굴 및 유니콘 기업 육성에 한계가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AI, 기후테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분야의 벤처기업 발굴 및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 벤처기업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7 신설).

Ⅲ. 검토의견

1. 전문벤처기업지원센터 지정 근거 신설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AI 등 전문 분야의 벤처기업 발굴·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벤처기업지원센터를 지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문벤처기업지원센터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7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조의7(전문벤처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AI, 기후테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분야의 벤처기업 발굴

현행	개정안
	·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벤처기업지원센터(이하 “전문벤처기업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전문벤처기업지원센터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전문벤처기업지원센터의 지정기준·절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벤처기업은 40,081개이고 그 중 첨단 제조·서비스 업종이 49.7%를 차지하고 있으며 벤처기업 1개당 평균 매출액은 65억 4,200만원임¹⁾.

‘2024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벤처기업들은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판로개척, 인력 확보 등에 애로를 겪고 있음²⁾.

현행법 제3조의5³⁾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의 혁

1)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2024.12, p.39.

2) ‘2024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에 따르면 벤처기업의 경영 애로 사항은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73.0%), 판로 개척(77.1%), 인력 확보(76.7%) 등임.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5(벤처기업 성장촉진 지원사업의 추진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벤처기업의 발굴·육성 및 그에 대한 지원
2. 벤처기업의 기술혁신과 사업화 촉진 지원
3. 벤처기업의 판로개척 및 해외진출 지원
4. 국내외 인재 및 투자 유치 활성화

신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의 발굴·육성 및 그에 대한 지원, 기술혁신과 사업화 촉진 지원, 판로개척 및 해외진출 지원, 국내외 인재 및 투자 유치 활성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벤처기업 성장촉진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또한, 현행법 제3조의6⁴⁾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전문인력 및 전담조직 등의 기준을 갖춘 기관을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같은 법 제3조의5에 따른 벤처기업 성장촉진 지원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은 2024년 12월 지정된 기술보증기금이 유일한 상황임.

개정안에 따라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을 전문벤처기업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면 AI 등 유망분야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혁신과 성장기반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됨.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6(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조의5 및 제16조의10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전담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기관을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이라 한다)이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의10(소셜벤처기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셜벤처기업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기술보증 및 투자
2. 소셜벤처기업 예비창업기업 또는 창업기업의 발굴·육성
3. 그 밖에 소셜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다만, 개정안이 전문벤처기업지원센터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전문 분야의 벤처기업 발굴·육성 지원”은 현행법에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업무로도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문벤처기업지원센터를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한 유형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한편, 개정안에 따른 전문벤처기업지원센터는 AI, 기후테크 등 전문 분야의 벤처기업 발굴·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개정안과 같이 지정 주체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정하는 것보다 전문 분야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정부”를 지정 주체로 하는 것이 적절한 점이 있어 보임.

또한, 중소기업부장관이 전문벤처기업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⁵⁾.

중소벤처기업부는 분야별 전문벤처기업지원센터의 지정 근거를 현행법에 신설하기보다는 농식품 벤처·창업 지원기관의 지정 근거를 두고 있는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⁶⁾ 등과 같이 각 분야별 법률에 규정

5)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지정 등) ④ 정부는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1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의2.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기간에 업무를 한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지원센터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지정받을 수 없다.

⑥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459

6)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6조의2(농식품 벤처·창업 지원사업의 추진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식품과학기술 성과의 보급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식품 벤처·창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벤처·창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농식품 벤처·창업 지원기관(이하 "창업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창업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농림식품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창업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보육·컨설팅 지원
2. 농림식품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생산한 제품의 판로 확보 및 홍보 지원
3. 농림식품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창업을 희망하는 자의 창업 자금 확보 지원
4. 농림식품분야 우수 창업자의 발굴과 홍보
5. 그 밖에 농림식품분야 벤처·창업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창업 지원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창업 지원기관의 지정요건, 지원 내용, 지정취소의 기준·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